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8길 16 **공증인가 소공합동법률사무소**
[별지 제33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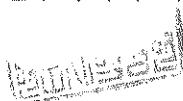
(전화) 02)776-6926, 777-6926
(팩스) 02)779-6926

등부 2015년 제 7269 호

인 증 서

주식회사 대한제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5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 대한제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사")의 제2차 임시주주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1. 일시: 2015년 9월 25일 오전 10:00

2. 장소: 본사회의실

3. 출석현황

주주총수	1 명	발행주식총수	100,000주
출석주주수	1 명	출석한 주주의 주식의 총수	100,000주

의장 대표이사 박충구는 본 회의의 소집에 대해 모든 주주가 그 소집절차의 단축 또는 생략에 동의하였는 바 본 회의의 소집 절차가 정관에서 정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출석한 주주가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후 의장은 본 회의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동 안건을 본 회의에 부의하였다.

제1호 의안: 주권발행의 건

의장은 별첨1과 같이 주권발행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바, 참석한 주주 전원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 2 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의장은 별첨2와 같이 정관변경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바 참석한 주주 전원 원안대로 승인하다.

의장은 이상으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총회 종료시간 오전 10시30분)

위 주주총회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15. 9. 25.

주식회사 대한제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장 대표이사

박 충 구 (인)



이 사 심 교 언 (인)



이 사 이 경 환 (인)



별첨1. 주권발행내역

발행회사	(주)대한제1호뉴스테이지物业管理부동산투자회사
회사성립년월일	2015년 4월 21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0 원
주권의 종류 및 수, 금액	보통주식 1매 일십만주권, 금 오억원
주식발행년월일	2015년 4월 21일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	황성규

별첨2. 정관변경(안)

변경 전	변경 후
<p>제9조 (주식의 종류)</p> <p>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각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p> <p>② 종류주식은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의결권이 있거나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게 되는 종류주식의 수는 최대 80,000,000주 이하로 한다.</p>	<p>제 9 조 (주식의 종류)</p> <p>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각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며, 종류주식은 누적적, 비참가적 으로 한다.</p> <p>② 회사는 매 결산기에 종류주식 발행가액의 연 3.00%의 비율로 해당 결산기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종류주식에 배당하고, 그 후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배당한다.</p> <p>③ 어느 사업연도의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제2항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이하 “누적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 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한다.</p> <p>④ 종류주식 배당금 산정에 있어서 산정기간은 회사의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1기 종류주식 배당금 계산에 있어서의 산정기간은 종류주식의 청약금 납부 익일부터 당해 회계연도 결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p> <p>⑤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수는 최대 80,000,000주 이하로 한다.</p> <p>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실권주의 배정 포함)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p>

제10조 (잔여 재산의 분배)

회사가 청산되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2. 보통주식에 대하여 남은 금액 전액을 분배한다

제10조 (잔여 재산의 분배)

회사가 청산되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종류주식의 누적 미배당분과 종류주식의 청약금 납부 익일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의 종류주식의 내부수익률이 3.54%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을 분배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3. 보통주식에 대하여 남은 금액 전액을 분배한다.

제54조 (사업연도)

- ①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등기일에 개시하고, 최초로 도래하는 12 월 31 일에 종료한다

제54조 (사업연도)

- ①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9월 1일 개시하여 2월 28일 종료하고(29일이 존재하는 경우, 29일 종료), 3월 1일 개시하여 8월 31일 종료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등기일에 개시하고, 최초로 도래하는 2월 28일 종료한다(29일이 존재하는 경우, 29일 종료).

부칙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8길 16 공증인가 소공합동법률사무소
[별자 제37호서식]

(전화) 02)776-6926,777-6926
(팩스) 02)779-6926

등부 2015 년 제 7269호

인 증

위 주식회사 대한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

2015년 09월 25일 자 2015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주주 황성규

의 대리인 정영주 는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 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15년 09월 30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명칭

공증인가 소공합동법률사무소

소 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지표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8길 16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아

래

1. 위임장
2. 인감증명서
3. 진술서, 확인서
4. 주주명부
5. 등기사항증명서
6. 정관